

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 - 250호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제20조제4항 및 「요양급여비용 심사·지급 업무 처리기준」 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·공고합니다.

2020년 9월 23일
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

「심사지침」 개정

치료재료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심사지침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심사지침 신규조문 대비표

현 행			개 정(안)			
치료재료			치료재료			비고
연 번	제 목	내 용	연 번	제 목	내 용	
1	<u>역행성담채관 내시경수술에 추가 산 정 된 Stone basket 인정범위 (치 료재료)</u>	<u>역행성담채관내시경수술(ERCP)시 다음과 같은 경우에 Stone basket 추가사용을 인정함.</u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- 다 음 -</u></div> <u>가. 쇄석술을 시행하는 경우</u> <u>나. 2cm 이상의 거대결석이 있는 경우</u> <u>다. 5개 이상의 multiple stone을 제거 하는 경우</u>	<삭제>	<삭제>	<삭제>	급여기준 신설에 따른 관련 심사 지침 삭제